

## 학생부종합전형 이의처리 지침(개정 2014.06.20)

|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----|
| 제 정 | 2010. 9. |
| 개 정 | 2014. 6. |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①이의 제기는 대학의 전형권자가 전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입학 지원자가 전형결과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한다.

②대학의 전형권자가 요구하는 이의제기는 학교 규칙의 위반이나 부정한 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
③입학 지원자가 요구하는 이의제기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만 답변이 가능하다.

**제3조 (절차와 방법)** ①일반적인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입학 지원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형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된다.

②전항에서 해결되기 어렵고 특별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, 민원인이 전항의 답변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답변한다.

**제4조 (이의처리위원회)** ①제3조 ②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의처리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은 입학처장이 임명하는 전임 입학사정관과 내부위촉사정관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한다.

④이의처리위원회는 심사에 따른 입학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6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5조 (준용)**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의 특례)** 이 규정중 제목과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